

서울교육대학교 - (재)서초문화재단 상호 교류 · 협력 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서초문화재단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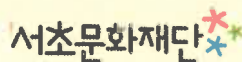
- 제1조 (목적)** 본 협약은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초문화재단 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기본원칙)**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제3조 (협력내용)**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한다.
1.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예술교육 및 예술 콘텐츠 개발
 2. 양 기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
 3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4조 (세부사항)** 제3조의 협약내용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- 제5조 (효력)**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, 기간 만료 이후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양 기관 간의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.
- 제6조 (기밀유지)**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한 공동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공 또는 공유 되는 각종 기밀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공동사업 추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공개, 배포, 유출하지 않으며 이는 본 협약의 효력 종료 이후에도 같다.
- 제7조 (수정 및 변경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7월 22일

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장 신 호



서 초 문 화 재 단
대표이사 강은경

장 신 호

강은경